제653호

무주 공보

2022. 6. 15. (수)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주군

편 집 : 기획실 (☎063-320-2224)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2-668호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회람							

무 주 군

무주군 공고 제2022-668호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산정하도록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7조제2항 및 별표 3)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7조제1항)

다.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공용)에 대해 인영 또는 고무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수수료 감면 표시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3항)

라.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재무과 세입팀
- 전자우편 : zyanggaz@korea.kr
- 팩스 : 063-320-22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재무과 세입팀(전화 : 063-320-2293, 팩스 : 063-320-2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 조례명 :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공개”를 “제증명,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受理), 등록, 지정 및 확인”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공개”를 “제증명,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으로, “한다)”를 “한다)의”로 한다.

제3조 중 “별표 2와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 별표 2와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별표 4”를 “감면(공용)으로 인영하거나 별표 4”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를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4]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제7조제3항 관련)

15cm

1.5cm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공용)하고 발행한 증명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증명,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受理), 등록, 지정 및 확인 ---------- --.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 ---------- 한다)의 ---------- ----------.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2와 별표 3과 같다.	제3조(요율) ---------- 별표 2와 ----------.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 2와 별표 3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	제4조(기준) ① 별표 2-------- ---------- ---------- ---------- ---------- ---------- ----------

현 행	개 정 안
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징수방법) ① (생 략)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결제의 방법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인감·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다. 1. ~ 3.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감면(공용)으로 인영하거나 별표 4----------.